

김 제품의 CODEX 규격 추진

Codex Standardization for Laver Products

노보영 | 우수식품인증센터
Bo-Young Noh | Food Certification Center

서언

김치를 시작으로 활발히 전개된 우리나라 전통 식품의 코덱스 규격화 사업은 고추장, 된장, 인삼 제품에 이어 김 제품을 차기 신규품목으로 채택하여 2010년부터 개발 중에 있다. 김은 인류가 이용한 가장 오래된 해조류 중의 하나로써 *Porphyra* 속 에 속하는 홍조류이며, 칼슘, 마그네슘, 요오드, 철, 아연 등 필수미량원소의 함유량이 높고 식이섬유 등 생리활성을 갖는 각종 유효성분을 다량 함유한 식품으로써 국제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호와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성인병과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건강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김 제품은 국내 수산물 수출제품 중 참치, 오징어에 이어 수출액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품목으로써, 김의 수출실적은 2011년 기준 1억 6천만 불에 달했다. 그러나 김 제품은 Laver라는 올바른

영문 명칭이 아닌 해조류 전반을 일컫는 Seaweed 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많은 국가에서 교역되고 있으며 크기를 비롯한 관련 품질기준들이 다르거나 모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김에 대한 관련 법령이나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김 제품의 CODEX 규격화는 국제 규격 설정을 통해 김 제품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우리나라 김 제품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증가하는 국제교역상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완화시키며, 다양한 소비층 확대는 물론 제품의 수출증대 및 국제적 상품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되었다.

본고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김 제품의 CODEX 규격화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CODEX의 개요 및 일반현황, 현재까지의 규격 추진현황, 규격개발의 주요쟁점사항 그리고 향후 일정 및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CODEX란?

김 제품의 CODEX규격화 추진현황의 설명에 앞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CODEX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CODEX의 일반현황

CODEX란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약자로 CODEX와 ALIMENTARIUS는 라틴어로서 각각 법령(Code), 식품(food)을 의미하여, 소위 식품법령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말로 직역하면 '식품법령위원회'라 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혹은 「코덱스」로 약칭하여 사용한다.

CODEX는 1963년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설립한 정부 간의 기구(IGO)로서 식품 전반에 관한 국제규격(Standards), 지침서(Guideline) 및 실행규범(Code of Practice)과 농약 및 수의약품에 대한 최대허용기준(MRL)을 개발하며,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교역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CODEX에서 개발된 모든 문헌 정보는 웹사이트(<http://www.codexalimentarius.org/>)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12년 12월 현재 전 세계 184개의 국가와 1개의 단체(EU)를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그 외 208개의 IGO를 비롯한 NGO와 UN 기구들인 참관인이 가입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71년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CODEX 규격기준이라 함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 규격기준을 의미하며, 현재 각국의 식품 관리기준으로 적용하는 권장 규격기준으

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개별 국가가 CODEX 규격을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식품교역상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CODEX 규격이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사용된다는 것이며, 개별 국가가 자국의 식품 관련 법령을 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국제 규범문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국은 CODEX 규격설정 과정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참여하게 대답하고 있다.

CODEX는 크게 의사결정기구인 총회(CAC)를 중심으로 하여 집행이사회(Executive Committee)와 사무국(Secretariat) 그리고 하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조직은 10개의 일반분과(General Subject Committees) 11개의 상품분과(Commodity Committees) 그리고 지역별로 분류된 6개의 지역조정위원회(Regional Coordinating Committees)로 구성되어 있다(Fig. 1).

CODEX의 총회를 비롯한 분과별 개최시기와 지역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현재 총회는 FAO와 WHO의 각 본부가 위치하고 있는 이태리 로마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매해 번갈아 개최된다. 각 분과 회의는 이미 정해져 있는 주최국(host country)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들의 CODEX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최국과 개최를 희망하는 개발도상국이 번갈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개최시기는 개최국 사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주제분과의 경우 매년 상반기 중에, 상품분과의 경우 1년 6개월 또는 2년(주로 하반기)마다 개최된다.

총회의 임무는 매 2년마다 선출되는 의장 및 세명의 부의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분과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총회로 상정된 사안들을 심의 및 채택하며, 이외 새로운 분과위원회의 설립, 규격제정과 관련한 기본원칙 등을 다룬다.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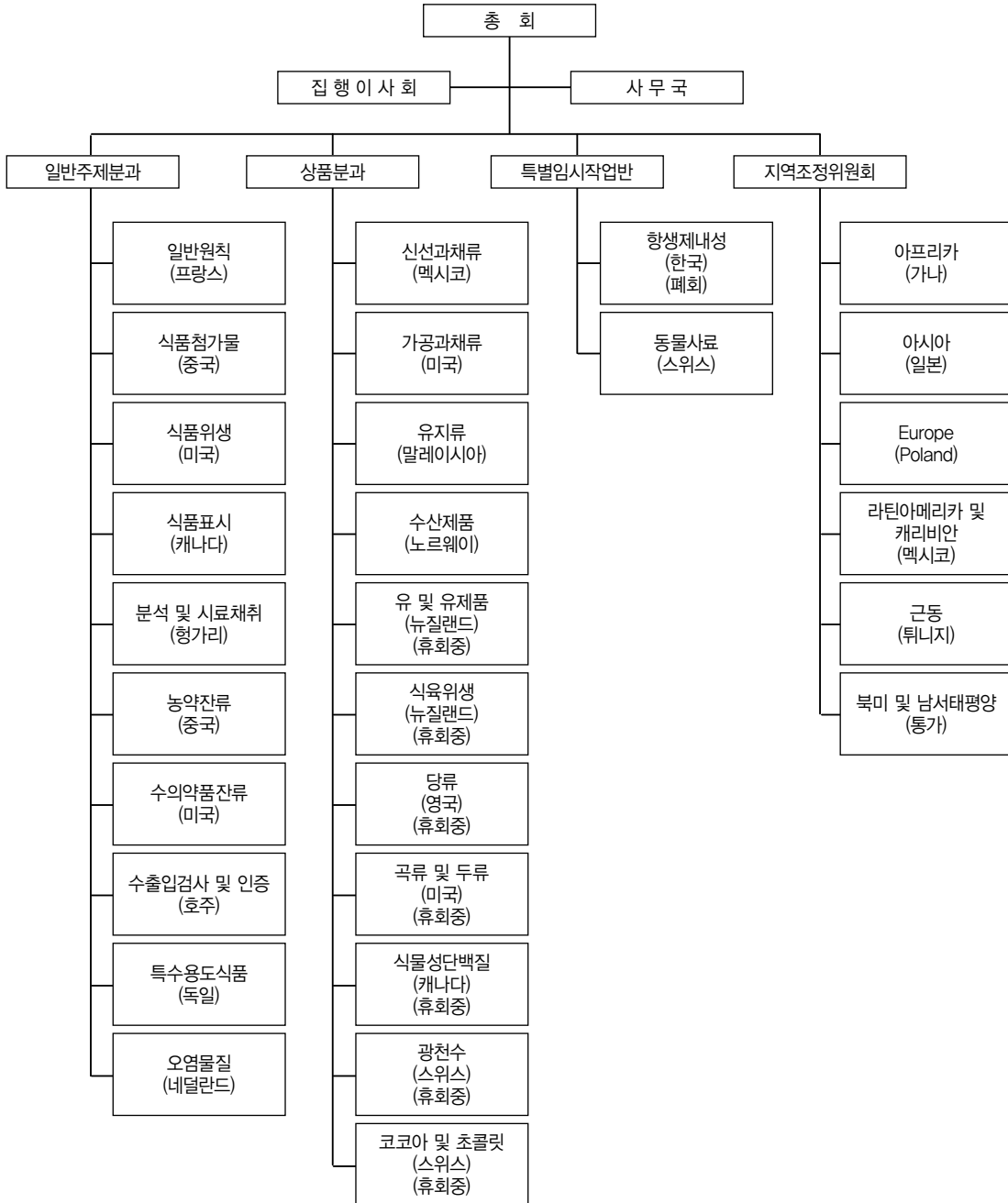


Fig. 1. CODEX Organizational Chart

집행이사회는 총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비롯하여 지역별 대표들로 구성되는데, 총회직전에 개최하여 총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기본방향을 미리 논의하고 자문, 권고를 하는 조직이며, 사무국은 CODEX위원회의 일반행정 및 전반적인 작업을 조정한다.

일반주제분과는 식품첨가물, 식품위생, 오염물질, 농약, 표시 등 11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한 논의를 한다.

상품분과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한 성분 및 가공기준 등 규격을 설정하는 분과위원회로서 가공과채류, 신선과채류, 수산물, 유지류 등의 분과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지역조정위원회는 아시아지역을 비롯하여 지역별 6개 그룹(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및 캐리비안, 근동, 북미 및 남서태평양)으로 나누어져있으며 해당지역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 정부간임시특별작업반(Ad Hoc Intergovernmental Task Force)이 있는데, 이는 총회에서 정한 특정한 사안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되는 조직이다. 우리나라는 항생제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작업반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운영한 바 있다.

CODEX 규격설정 절차단계

CODEX에서 제정되는 모든 규격과 문서의 설정 절차는 CODEX 규정집¹⁾(Procedural Manual)에

서 정의하고 있는데, 제정절차에는 일반절차(Uniform Procedure)와 신속절차(Uniform Accelerated Procedure)가 있다. 일반절차를 따르도록 논의가 시작된 문서라 하더라도 해당 하위분과의 권고 및 총회의 의결을 따라 빠르게 진행되는 신속절차의 진행을 밟을 수도 있다.

일반절차는 문서의 제정을 위해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하는 진입단계를 비롯하여, 1단계에서 8단계까지의 과정을 거친다.

1단계를 착수하기 위한 진입단계로, 해당품목 혹은 안전에 대해 제안국이 토론문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적정분과위원회에 제출하면, 해당 분과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한다. 해당 분과위원회에 의해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후 동 분과위원회가 신규작업을 총회에 요청하면 이에 대한 작업승인을 총회가 하는 1단계 이후, 2단계에서는 제안국과 관심국가들이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을 작성하여 사무국에 제출한다. 사무국은 이 규격초안을 각 회원국에 회람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데 이것이 3단계이며, 1단계에서 결정된 작업 분과위원회에서 각 회원국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토대로 규격초안에 대한 개정 및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4단계이다. 작업 분과위원회에서 규격초안에 대한 회원국 간의 합의가 도출될 경우 이 규격초안은 5단계로 상정되며, 총회는 이를 심의하여 다음 단계로의 진행 혹은 반려를 결정한다. 5단계 총회 심의를 통과한 규격초안은 6단계에서 규격안(Draft Standard)으로써 5단계 심의 결과에 따른 규격안의 수정 및 각 회원국으로의 회람을 다시 거치고, 7단계 해당 분과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8단계 총회에서 최종 규격(Standard)으로 채

1) CODEX 총회와 하위분과들의 법적재단 및 실용기능을 기술하고 있는 설명집으로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20번째 판 발행

진입단계	토론문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제출(제안국) → 필요성 검토(해당분과)
1단계	Codex 규격설정 필요성 확인 및 작업승인(총회)
2단계	Codex 규격 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작성 및 제출(제안국)
3단계	Codex 규격 초안 각국 발송, 회람 및 의견 수렴(코덱스 사무국)
4단계	접수된 각국의 의견 고려하여 Codex 규격 초안의 심의(해당분과)
5단계	Codex 규격안(Draft Standard) 확정(총회)
6단계	Codex 규격안 각국 송부, 의견 수렴(코덱스 사무국)
7단계	Codex 규격안 심의(해당분과)
8단계	Codex 규격 최종 확정(총회)

Fig. 2. CODEX standardization – uniform procedure

택된다(Fig. 2).

신속절차는 총회 또는 집행이사회에서 신속절차 적용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일반절차와 유사하나 6~8단계, 즉 2~5단계의 반복과정으로 볼 수 있는 단계를 생략한 5단계에서 최종 채택되는 절차이다(Fig. 3).

CODEX 절차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1~8 단계까지의 단계 과정을 밟아야 하는 장기적인 작업이며, 1단계 작업 승인 이후 통상 5~7년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정도 회원국들 간의 합의도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우리나라 인삼제품의 예와 같이 10년 이상 소요되거나, 혹은 절차 도중 논의가 중단되거나 철회되는 경우도 종종 발

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코덱스 규격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CODEX 규격화는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식품화를 도모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Fig. 4). CODEX 규격개발 과정을 통해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개발된 규격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장벽에 대비한 국제 공인 문서로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입단계	토론문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1단계	총회에서 신속절차를 밟을 것을 결정
2단계	일반절차와 동일
3단계	일반절차와 동일
4단계	일반절차와 동일
5단계	Codex 규격으로 최종 확정

Fig. 3. CODEX standardization – uniform accelerated procedure

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는 1995년 ‘전통식품의 CODEX 규격화 사업’을 중요한 정책사업으로 설정하고 규격화를 위한 기술적 업무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수행하도록 결정하였다. 규격화를 위한 첫 번째 품목은 당시 논란이 되었던 일본의 ‘기무치’ 국제규격화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김치가 선정되었으며 5년 여 동안의 CODEX 규격개발 과정을 거쳐 지난 2001년 우리나라 전통식품 중 최초로 김치가 CODEX 세계규격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김치에 이은 후속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식품인 고추장, 된장, 인삼제품이 2009년 나란히 CODEX 지역규격으로 채택되었다.

이들 식품은 CODEX 규격의 채택을 계기로 국제적 인지도가 매우 높아졌으며 교역 과정 중 발생하는 분쟁에서 코덱스 규격은 우리나라의 입장을 제시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제품의 코덱스 규격화 추진현황

추진배경

2001년 김치(Kimchi)가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CODEX 세계규격으로 채택되고 고추장, 된장, 인삼제품이 잇따라 2009년에 각각 지역규격으로 채택되었다. 이후 신규품목 선정을 위한 우리나라의 전통식품 또는 수출전략식품 중 CODEX 규정집(Procedural Manual)²⁾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우선순위결정기준’에 부합되는 품목을 선별한 결과, 가래떡(떡볶이떡), 젓갈(육젓), 천일염, 유자차, 김 등을 향후 추진 후보군으로 선발하였고, 최종적으로 김이 선정되어 이때부터 김에 대한 본격적인 코덱스 규격화가 시작되었다.

김은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기준 1억 6천만불에 달하는 소위 수출 효자 품목 중의 하나로서, 다양한 식품과의 조화와 건강식으로 알려져 서구권 국가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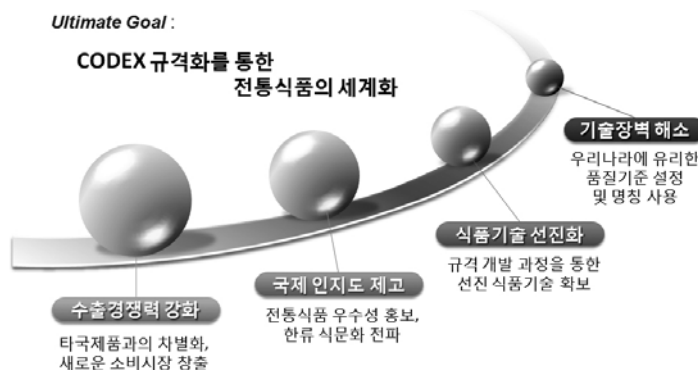


Fig. 4. Ultimate Goal of CODEX Standardization for Korean traditional food

2) CODEX 총회와 하위분과들의 법적재민 및 실용기능을 기술하고 있는 설명집으로 주기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현재 20번째 판 발행

Table 1. Laver export volume by Korea

	2007	2008	2009	2010	2011
중량(kg)	6,672,204	7,897,295	9,295,442	9,560,462	11,963,552
금액(\$)	59,728,188	75,312,972	81,507,454	105,196,733	161,493,974

자료: 농수산물무역정보

이며 그 생산 및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Table 1).

김의 주요 생산국이자 소비국은 중국, 일본, 한국이며, 2008년 원료 김의 세계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 중 각각 중국 59%, 일본 25%, 한국 16%로 130만톤이지만 교역에 있어서는 한국이 2009년 김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였다(Table 2).

이렇게 김의 국제적인 소비량이 늘어 활발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국가가 김 또는 김 제품에 대한 명칭이나 기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김의 명칭은 혼동되어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 정확한 영문 명칭은 Laver이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김이 Seaweed(해조류)로 분류되어 유통되거나 혹은 반대로 김이 아닌 다른 해조류 제품이 Laver(김)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김 제품은 가

공 방법에 따라 마른김, 구이김 및 조미김 형태로 유통, 소비되고 있으며 국가 간 교역되는 제품도 주로 이들 형태이다. 그러나 제품 유형별 분류나 정의, 크기, 중량 등이 국가별 또는 업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제품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김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명칭 등의 혼란은 이 제품의 교역에서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요 품질 요소에 대한 국제규격이 필요하다.

김 제품에 대한 CODEX 규격개발은 김 제품에 대한 품질의 우수성과 위생의 안전성을 보증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시킴으로써 김 제품의 국제적 소비확대와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Table 2. Export value by major producer

(단위: 1000 USD)

유형	국가	2005	2006	2007	2008	2009
마른김	한국	16,021	24,803	20,569	26,334	23,605
	중국	23,702	19,593	28,774	23,534	25,446
	일본	3,158	1,990	2,509	6,040	3,424
	합계	42,881	46,386	51,852	55,908	52,475
조미김	한국	35,900	34,429	37,351	47,619	56,970
	중국	42,088	41,924	51,071	53,856	52,426
	일본	9,087	9,767	13,033	12,528	10,998
	합계	87,075	86,120	101,455	114,003	120,394
총합계		129,956	132,506	153,307	169,911	172,869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통식품의 CODEX 규격화 연구용역최종보고서 2010에서 재인용

추진현황

김제품의 코덱스 규격화는 2010년 11월 제 17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 지역규격으로의 개발로 그 첫발을 내디딘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의 지역규격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가가 지지하였으나, 중국은 자국이 세계적인 생산과 수출량을 보유하고 있어 반해 제품 교역의 문제점을 전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마다 다른 기술 공정 및 재료 그리고 소비자의 성향을 단일규격으로 제정하는 것은 오히려 제품의 교역과 해당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규격개발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세웠다.

그러나 상당수 국가가 김 제품에 대한 코덱스 지역규격개발을 지지하였고, 또한 당시 회의에 참석하였던 인도대표가 “김 제품이 지역 외에서도 거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제품에 대한 세계규격 개발이 더 적절할 수 있다”고 제안함에 따라 김 제품은 지역규격이 아닌 세계규격으로써 개발되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리하여, 2011년 4월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31차 어류 및 수산제품분과(CCFPP)에 세계규격 개발을 위한 새로운 작업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당 분과에서 해조류 제품이 분과의 업무 위임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작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로 김 제품에 대한 작업이 승인되지 않았고, 이에 우리나라는 17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의 권고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지역규격으로써 김 제품에 대한 신규작업 제안서를 차기 총회에 다시 제출하기에 이른다.

2011년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34차 총회에서 김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었으며, 일본은 17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 이어 동

일하게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중국은 본 제안 건이 “2010년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미 합의된 사안이고, 2011년 수산분과위에서도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으며, 중국이 가장 큰 수출국가임에도 한국 측의 제안서에 중국 규격의 일부분만 설명 되어 있고, 현재 국제 규격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교역상의 문제가 없으며 제품의 다양성 때문에 단일 규격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등의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서와 동일한 반대이유로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신규작업을 재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김 제품의 지역규격개발 사안은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대다수의 국가가 지지를 표명하였고 수산제품분과위원회(CCFPP)에서 지역규격이 적합하다고 합의가 되었으며 총회 직전 집행이사회에서 중점심의를 거쳐 지역규격으로 개발할 것을 권고 받았음을 언급하였다.

중국 측의 잇따른 반대발언이 계속되었지만, 상당수 국가가 김 제품의 규격개발에 지지를 표명했고, 대부분의 의제가 해당 분과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총회에서 의제로 상정된 만큼 강한 반대가 없는 경우는 그대로 채택되는 경향이 큰 코덱스의 회의진행 분위기 상, 중국 측의 반대에도 김 제품은 마침내 총회에서 지역규격으로써 개발되도록 1단계로 채택이 되었다.

이로부터 한·중·일은 김 제품의 본격적인 규격초안 개발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그러나 2011년, 2012년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와 전자교신을 통한 작업을 통해서도 각 국의 참여한 입장 대립으로 18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던 김 제품의 규격초안은 범위(Scope)항목 등의 합의된 몇몇 항목을 제외하고 제품의 특성상 관련된 품질요소를 비롯한 오염물질

항목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초안으로써 완성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8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현재까지의 작업 진행상황을 안내하고 규격초안의 진행 작업에 있어 합의되지 않은 항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작업시간이 필요하여 당 회기에 규격초안이 준비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각 국의 입장 대립을 보였던 항목들 중 특히 중국과 일본의 예민한 사안이었던 부분은 중금속이었다. 일본 측은 한·중·일 실무협의회에서도 주장했던 바와 같이 김 제품의 CODEX 규격개발을 위해서는 김의 오염물질에 관한 조사도 병행해야 하고 필요할 경우 중금속의 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몇몇 국가들도 김 제품의 오염물질에 관한 현존자료의 검토와 최적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함에 따라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는 이 문제에 대해 오염물질분과(CCCF)의 자문을 구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한 조사와 관계없이 규격개발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합의되었다.

그리하여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의 합의결과에 따라, 차기 회기인 제 19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가 개최되는 2014년까지 향후 2년간 한·중·일 3국은 한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부의장을 맡는 전자작업반을 통해 김 제품의 규격초안개발에 주력을 하게 되었다.

규격개발 주요 쟁점사항

김 제품의 원활한 CODEX 규격개발 추진을 위해 김제품의 주요 생산 및 소비국인 한·중·일 3국은 본 회의 외에도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와 전자교신을 통한 작업을 진행하였다.

김 제품의 규격개발에 대한 착수 조사 및 제안서 작성 단계 시점부터 CODEX 본회의와 실무협의회를 거치는 과정동안 중국과 일본은 상이한 입장을 보여 왔다.

2010년 17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ISA)에 본격적으로 김 제품에 대한 규격개발을 제안하기에 앞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농업부와 일본의 농림수산성을 방문하여 본 사안에 대한 발표와 제안 및 지지를 요청하였다. 당시, 중국 정부가 김 제품의 세계적인 생산, 소비 및 교역량을 고려하고 김의 주요 생산국인 한·중·일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김의 국제규격설정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일본은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17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를 비롯한 본 회의에서 중국은 한·중 협의회 때와는 달리 규격개발에 대한 강한 반대 의견을 개진한 반면 일본은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2차례에 걸친 CODEX 회의와 34차 총회에서 김 제품에 대한 지역규격개발이 합의를 봄에 따라 한·중·일 3국은 김의 주요 생산 및 소비국으로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과 중국에서 비공식적인 실무협의회를 갖게 된다. 실무협의회에서 한·중·일 3국은 한국이 마련한 규격의 초안을 바탕으로 각 국의 산업계를 고려한 입장을 반영하여 규격초안작성을 위한 협의를 하였다.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규격에서 다루게 될 김 제품의 종(species)에서부터 제조과정 중의 소포제 사용이나 조미김의 허용 식품첨가물 및 기타 김 제품의 특성상 품질을 좌우하는 요소들(이물질, 크기, 구멍기 등) 외에 가장 예민하게 대두되었던 오염물질에 관한 것이었다.

실무협의회는 중국이 17차 CCASIA와 34차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개진하였던 당시 입장과는 상반되게 규격개발에 지지를 보냄으로써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일본정부가 오염물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양국이 예민한 대립을 이루었기에 중국은 다시 규격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김의 오염물질, 특히 중금속 함량에 관해 일본은 1, 2차 한·중·일 실무협의회는 물론 18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서도 ‘오염물질’ 항목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 및 검토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중국은 일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 강하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금속에 대한 논의가 대두될 경우 김 제품의 CODEX 규격개발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중국은 중금속 설정에 관한 논의가 언급되면 김 제품의 규격개발을 지지할 수 없음을 수차례 밝혔으나 일본은 소비자 보호 및 산업계 요청을 근간으로 본 검토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입장 대립을 보임으로써 당시 실무협의회에서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일본과 중국의 이와 같은 대립은 김 제품의 규격개발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었으나, 향후 김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건강을 추구하는 차원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설득과 18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서의 다른 나라들의 중금속 기준 설정에 대한 검토의 지지에 김 제품의 규격개발은 2년을 연장하여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

향후일정

2010년 김제품의 CODEX 지역규격개발 착수를 시작으로 작업계획서를 제안하여 이듬해 총회에서 1단계 채택이 된 후, 김은 현재 2단계 규격초안 작성 단계에 있다. 그러나 2012년 11월 18차 아시아

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 예정대로 지역규격초안이 제출되지 않았음에 따라, 김 제품은 지역조정위원회가 2년마다 개최되는 점을 감안할 때 2014년에 다음 회기인 제 19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규격초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19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 규격초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2012년 18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김제품의 규격초안개발과 관련하여 구성된 전자작업반에서 CODEX 각 회원국에게 작업개시전갈(kick-off message)을 발송하여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전자작업반은 아시아지역조정위(CCASIA)의 합의결과에 따라, 한국이 규격개발에 대한 주도를 하고 일본이 부의장을 맡아 차기 회기인 제 19차 아시아지역조정위(CCASIA)가 개최되는 2014년까지 향후 2년간 김 제품의 규격초안개발에 주력을 하게 된다. 전자작업반은 영어로 작업하며 작업반 위임사항은 (i) 차기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김 제품의 규격초안을 준비하고 (ii) 일본의 오염물질 검토에 대한 주장에 따라 CODEX오염물질의 일반규격(GSCTFF)의 일반참고사항이 김 제품에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차기 CCASIA에 이에 따른 권고안을 제출 하는 것이다.

규격초안(Proposed Draft Standard) 작성 작업이 원활히 진행되어 2014년 제 19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규격초안에 대한 논의가 회원국 간에 합의되면 김 제품에 대한 규격초안은 4단계에 진입하고, 이듬해 2015년에 38차 총회에서 5단계 통과 시 규격안(Draft Standard)으로 채택된다.

채택된 규격안은 2016년 20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까지 작업하여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2017년 40차 총회에서 최종 규격(CODEX Standard)으로써 채택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던 바와 같이 CODEX가 다자간의 국제협상을 바탕으로 하고 한·중·일 3국간에 미합의 된 사안도 단계진입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러한 단계별 진입은 CODEX 규정집의 절차에 따른 예측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언

CODEX에서 하나의 규격 혹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10년이 걸렸던 인삼제품의 전례나 앞서 본문의 CODEX 규격설정절차에서 기술하였던 바와 같이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김 제품은 2010년 우리나라 수출전략식품 중 코덱스 규격화의 신규품목으로 선정되면서부터 작업이 진행되어 같은 해 제 17차 CCASIA(11월)에서 그 규격개발 필요성이 논의되었던 품목이다.

당초 김 제품의 CODEX규격 개발 작업은 제품의 주 생산량 및 거래량을 고려하여 지역규격 개발을 1차 목표로 하고 향후 세계규격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방대한 교역량을 바탕으로 한 세계규격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산제품분과(CCFPP)에서 논의되었고, 해당분과의 위임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래 계획대로 지역규격으로 개발되도록 34차 총회에서 승인되었다. 그리하여 17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에서 본 작업에 대한 전자작업반이 공식적으로 구성되지 않았으며 총회의 권고에 따라 관심국가가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김제품의 주요 생산 및 소비국인 한·중·일 3국이 전자작업과 실무협의를 거쳐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본은 실무협의회 및 18차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CCASIA) 회의에서도 오염물질 특히 중금속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고 이에 전자작업반의 위임사항에도 오염물질에 대한 검토 작업이 포함되었다. 중국 역시 전자작업반에 협조하기로 표명함에 따라 중국이 실무협의회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바와 같이 ‘오염물질이 거론될 경우 규격 개발에 반대’ 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발 과정 중에 오염물질에 대한 검토 작업이 중국 측에 불리하게 전개될 경우에는 오염물질 이외에 다른 미합의 사항에 대한 시비를 통해서도 논의를 지체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진다.

향후 2년간 운영될 전자작업반의 위임사항은 지역규격 개발과 김 제품의 중금속 기준 설정여부를 위한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금속 기준 설정여부의 검토 결과에 상관없이 지역규격 개발은 당초의 일정을 따라 진행될 것이며, 김의 중금속에 관한 민감한 사안이 대두되고 규격개발과정에 있어 중·일 양국의 대립이 지속되어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 할지라도 김에 대한 오염물질 검토는 김 산업 및 소비자 보호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측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CODEX는 184개국의 국가가 회원국으로 있어 국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며, 과학적 사실과 근거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교섭 등이 많이 작용한다. 중국 측의 지속적인 규격개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34차 총회에서 김 제품이 1단계로 채택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배경 중 하나는 본 회의 개최 직전에 개최된 집행이사회가 김 제품 신규작업을 승인하여 주도록 총회에 건의한 것이 우리 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고 보이는 데, 이와 같이 국가 및 개인 간 또한 사무국직원의 친분이 이번 김 제품을 채택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사료된다.

이렇듯 CODEX 규격설정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합의 및 정치적인 교섭이 큰 바탕이 되지만, 전통 식품의 국제규격화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내에서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한 합의 도출이 가장 중요한 전제이다.

● 참고문헌 ●

1.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2.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3. 신성균,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국제표준제정 동향분석, 한국지역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ence, **18**(4), 699-709, 2007
4. 전통식품 CODEX 규격화 기술지원 연구용역보고서, 한국식품연구원, 1997-2004
5. 전통식품의 CODEX 규격화 연구 보고서, 한국식품연구원, 2005-2011
6. 한규재, 인삼제품의 Codex 규격화 추진현황, 식품기술 Bulletin of food technology, **18**(3), 3-24, 2005
7.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www.codexalimentarius.net
8. CODEX PROCEDURAL MANUAL, 20th edition, World Health Organizatio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2011

노보영 문학석사
 소 속 : 한국식품연구원 우수식품인증센터
 전문분야 : CODEX 국제표준화
 E - mail : bynoh@kfri.re.kr
 T E L : 031-780-9351